

2006. 2. 12(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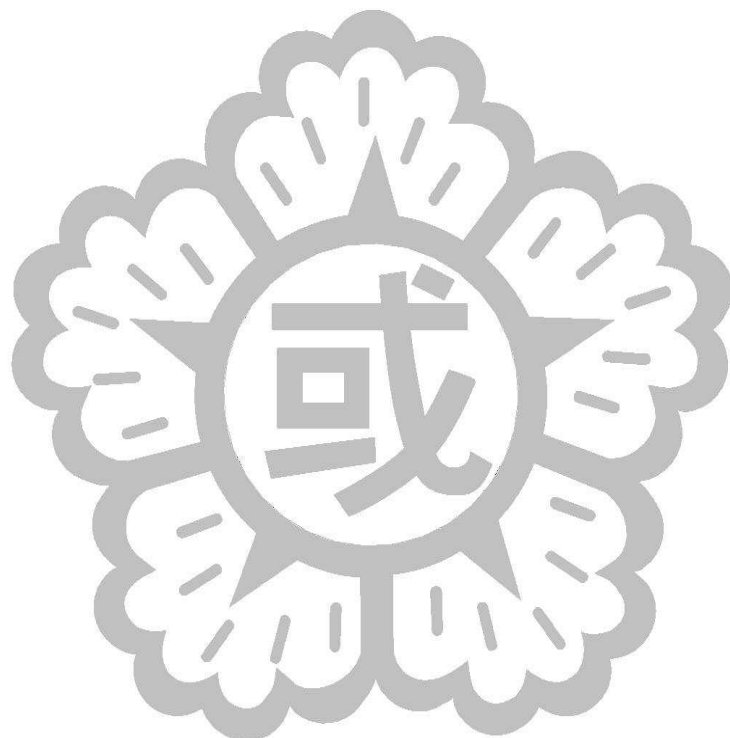
2006년도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1교시)

가형

제1과목 : 언어논리영역

제2과목 : 헌 법



▶ 응시번호 :

▶ 성 명 :

국 회 사 무 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향후 일정 안내

- ▶ 시험시간 : 10:00~12:00
- ▶ 정답가안 발표 : 2006. 2. 12(일), 20:00
- ▶ 정답이의제기 기간 : 2006. 2. 13(월)~16(목)
- ▶ 확정정답 발표 : 2006. 2. 22(수)
- ▶ 1차합격자 발표 : 2006. 2. 28(화)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에 제시된 한국 친족지칭어의 구성 원리를 통해 볼 때, 자신이 진외종숙(陳外從叔)과 증대고모(曾大姑母)라고 지칭하는 친족원이 누구인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국의 친족지칭어는 거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단일 한자로 구성된 친족지칭어는 부(父), 형(兄), 처(妻) 등과 같이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형수(兄嫂), 제수(弟嫂), 고모부(姑母夫)와 같이 2개 이상의 개별 한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한자어로 구성된 친족지칭어는 ‘친족관계를 지시하는 유의미한 최소단위’인 친족형태소가 결합된 형태를 취하는데, 친족형태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개별 친족용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부(父), 형(兄), 수(嫂)와 같은 명사적 형태소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친족관계의 지시와는 무관하고 독립적으로 친족용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대(大), 고(高), 종(從)과 같은 관형사적 형태소이다.

관형사적 형태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과 친족원과의 세대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大)는 자신으로부터 2세대 높거나 낮은 친족원을, 증(曾)이나 증대(曾大)는 3세대 높거나 낮은 친족원을, 고(高)는 4세대 높은 친족원을 지시한다. 두 번째는 방계의 정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종(從)은 한 세대 위에서 방계로 나뉜 친족원임을, 재종(再從)은 두 세대 위에서 방계로 나뉜 친족원임을 지시한다. 세 번째는 출계집단을 구별하는 형태소로서, 외(外)는 어머니 쪽 친족원을, 진외(陳外)는 아버지의 어머니쪽 친족원을 지시한다.

관형사적 형태소는 명사적 형태소와 결합하여 친족지칭어를 구성한다. 아버지의 남자 동생(형제)을 지시하는 형태소 숙(叔)을 예로 들면, 종숙(從叔)은 아버지보다 한 세대 위에서 방계화된 친족원임을 보여주는 형태소 종(從)과 숙(叔)의 결합형으로서, 조부(祖父)의 남자형제의 아들을 지시하며, 외숙(外叔)은 외(外)와 숙(叔)의 결합을 통해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지시한다.

진외종숙(陳外從叔)	증대고모(曾大姑母)
①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고조부의 여자형제
②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고조부의 여자형제의 딸
③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증조부의 여자형제
④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증조부의 여자형제
⑤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손자	고조부의 여자형제

2.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옹호하는 세계관에 부합되는 의견을 <보기>에서 가장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탈중심화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가장 필요한 구조적 변화이지만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세계관의 변화에 동반되어야 한다. 증가하는 생태적 재난은 자연계의 광범위한 상호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학술기관은 갈수록 좁게 집중된 전문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산업문화라는 질병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다. 역설적으로 보다 작은 규모의 정치적·경제적 단위를 향할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세계관 - 상호관련성에 기초한 세계관 - 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동체와 삶에 대한 긴밀한 연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에 대한 이해를 장려해줄 것이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발명의 땅과 주위의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일상사로서 경험한다. 그러한 상호관련성에 대한 깊은 경험적 이해 - 자신을 생명의 연속체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것 - 는 현대사회의 분석적이고 단편화된, 그리고 이론적인 사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 < 보 기 > —

ㄱ.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있다.
ㄴ. 생태적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있으므로 현재의 자연과학과 그에 기초한 테크놀로지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ㄷ. 이제까지 과학을 지배해 온 자연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기체적 자연관을 되살려야 한다.
ㄹ. 어떠한 정치적 질서도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에 반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 마련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탈중심화가 시대적 요청이라면, 그것은 무정부주의로 귀결되어야 한다.
ㅁ.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이 성인 남성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① ㄱ, ㄷ
③ ㄴ, ㄷ
⑤ ㄷ, ㅁ
- ② ㄱ, ㄹ
④ ㄷ, ㄹ

3. 다음 글에 직접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의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용이 증가하면 총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공동체의 심리는, 총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만약 고용 증가의 전체가 당장의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고용주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양의 고용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의 고용에 공동체가 소비하기로 한 양을 초과하는 총산출량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양의 정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투자량이 없다면, 기업가들의 수입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주도록 기업가들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액수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소비 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고용수준 즉 고용주 전체가 고용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수준은 정상 투자량에 의존한다. 그리고 정상 투자량은 우리가 ‘투자 유인’이라고 부르려는 것에 의존하며, 투자 유인은 ‘자본의 한계효율스케줄(schedule of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과 다양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대출에 대한 이자율 체계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분석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 고용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의 증가가 멈출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의 가치가 여전히 고용의 한계비용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산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부유할수록 실제 생산과 잠재적 생산의 차이가 커질 것이고, 따라서 경제 체계의 결점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공동체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주 적은 투자량만으로도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지만, 부유한 공동체는 비교적 부유한 구성원의 저축성향이 가난한 구성원의 고용과 양립하기 위해 훨씬 더 풍부한 투자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잠재적으로 부유하지만 투자 유인이 약한 사회에서는 그 잠재적인 부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원리가 작용해서, 사회 전체가 매우 가난해질 것이다. 또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충분히 줄어들어 취약해진 투자 유인에 맞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부득이 실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① 한 공동체의 소비 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고용수준은 정상 투자량에 의존한다.
- ②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부유한 공동체일수록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 ③ 소비성향이 일정하다면, 자본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의 관계는 고용 수준에 영향을 준다.
- ④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도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과잉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하여도 유효 수요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4. 다음 글에서 A의 설명과 지적을 모두 파악했을 때 ()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서양학자들은 도(道)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도로를 은유로 사용해 왔다. 예를 들면 A는 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로라는 은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禮)를 도의 ‘도로 구조’로 묘사하고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도로’가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길들(roads)은 확실히 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도로가 길을 의미하는 똑같은 예가 고전 문헌에도 나타난다. 또 주(周) 왕조 금문에 서도 도의 의미 가운데 ‘도로’가 들어 있다. 하지만 A는 길의 은유가 철학적 개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도와 연관된 원칙이나 이미지가 십자로에 의해 함축된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의 길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도가 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수로나 도로, 즉 사람이 따라 걷는 땅 위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수로 등은 모든 종류의 길을 포함하는 일반적 범주이다. 만약 우리가 도의 은유 뿌리로서 도로를 취한다면 그것은 () 그러나 만약 개념의 전형으로서의 도로보다 물의 흐름이나 수로의 자연적 코스를 취한다면 더 이상 특이한 점이 없어진다. 비록 수로는 지류들에 의해 합류되지만 원천을 갖고 있으며 한 방향으로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아래로 움직일 것이다.

도를 길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길은 서양에서 친근한 형이상학적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길에 의한 반향은 ‘다마스쿠스로 통하는 길’에서부터 현대의 영화에서 표현되는 길에 관한 이미지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길에 대해 심원한 이미지에 쉽게 반응한다.

그러나 도를 길로 해석하는 것은 길이 ‘잘못된 인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데에 호소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에게 길은 정신적 여행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여행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하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닫고 자기를 구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신이든 자기 자신이든 길 위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길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길이다. 반면 고대 중국인들은 도를 따르므로써 신이나 내적 자신과 만나지는 않으나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완전한 사람만이 도를 따르는 것이다.

- ①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다가 결국 한 곳으로 모이는 길이 될 것이다.
- ②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교차점이 없는 특이한 길이 될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순환 구조를 가진 특수한 길이 될 것이다.
- ④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두 길이 끊임없이 평행하게 진행될 것이다.
- ⑤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교차점이 있어 순간의 선택이 허용되는 길이 될 것이다.

5. 다음에 제시된 상훈과 형진의 대화 내용을 읽고 <보기>에서 상훈의 입장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상훈 :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나 공정성이라는 덕목이 요구하는 바이지요. 윤리적인 교육자들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형진 : 하지만 교육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장학사는 교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지요. 그리고 교사는 어떤 학생에게는 A라는 성적을 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D라는 성적을 줍니다. 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에게 방과 후 보충 수업도 해 주고 영재에게는 특별한 교육의 기회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에서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훈 : 그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관련된 차이에 상관없이, 단순히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학사는 교사보다 더 큰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D를 받은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A를 받은 것입니다.

형진 : 그렇다면 동등한 대우가 아니라 차이가 중요한 것이군요.

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대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둘째, 일을 A 수준으로 수행한 사람의 경우처럼, 관련된 차이를 가진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업적을 달성했을 때 어떤 학생에게는 B를 주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A를 주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진 : 다소 혼란스럽군요.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동등한 대접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한 괜찮다는 말씀이군요.

상훈 : 네, 바로 그것입니다!

〈 보기 〉

ㄱ. 동등한 대우는 ‘동일한’ 대우를 의미할 때 가장 적절하다.

나. ‘동등한’ 대우를 ‘공정한’ 대우로 정의함으로써 ‘동등한 대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㉔.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준거가 되는 ‘관련된 차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ㄹ. 동등성의 개념은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상위 동등성 개념과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하위 동등성 개념 간에 개념적 우선순위를 인정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 능력주의적 입장을 ‘평등주의’라는 옷을 입혀 정당화하고 있다.

-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6.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논증 방식을 A와 B로 나타낼 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한 (㉠)에 의해서 세워진 구조물이라는 소박한 생각은 마치 집을 지을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소박하기 그지없다. 물론 이때 ‘소박하다’는 말은 삶을 소박하게 욕심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과는 의미의 맥락이 다르다. 이 경우의 소박함은 관찰과 실험에 호소하는 지식만이 가장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소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순전히 관찰에만 호소하여 얻어진 지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을 때 드러난다.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로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관찰된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이 이끌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관찰을 넘어 설명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관찰자가 단순히 관찰하는 기계와 같은 사물이 아닌 이상,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 얻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의 말대로, 베이컨의 (㉡)주의는 과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의 구실을 생략한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진정한 과학적 발견을 비행기의 비행과 비유한다. 발견의 과정은 특수한 관찰을 토대로 기록하여 상상력을 통한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비행 후, 합리적 해석에 의해 새롭게 얻은 관찰로 다시 착륙하는 일련의 비행과 같다고 말한다.

순수한 관찰을 통한 (㉔)적 추리만이 객관적 지식을 보증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소박한지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그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의 칠면조의 슬픈 이야기이다. 주인이 아침 9시만 되면 모이를 가져온다. 칠면조는 수많은 시간을 다양한 조건 아래에서 9시에 주인이 모이를 준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인은 항상 9시에 모이를 갖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관찰(?)을 토대로 칠면조는 드디어 “나는 항상 9시에 모이를 주인에게서 받아먹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이브 날 칠면조의 결론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칠면조는 모이를 받는 대신에 자신의 목을 주인에게 내놓고 말았다.

이 예는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법칙과 이론 위에서 (Ⓜ)적 추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다.

- ① A, A, A, A, A, B ② A, B, A, A, B, A
③ A, B, A, B, B, A ④ A, A, B, A, B, A
⑤ A, B, A, A, A, B

7. 다음 글 (가)에서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글 (나)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가) 권력관계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생산, 지각, 경험되는 일상생활의 장을 부르디외(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 부른다. 아비투스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실천을 추동하는 배경인 동시에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화의 상호작용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비투스는 몸, 몸에 대한 사고, 몸짓, 행동양식, 자세 등을 형성한다. 몸은 아비투스를 표현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집적체로서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비투스는 사회질서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사회적 필요에서 생긴 행위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으로 전환시킨다. 흔히 자세나 표정, 감정, 행동양식, 취향 등에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것으로, 혹은 검손하거나 품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요소들은 계급질서나 성적 위계질서 등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이른바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기존의 세계를 이미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화된 이념들에 의해 고착된 의식작용보다는 몸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몸은 권력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수용하고 습득하고 반복한다. 일상을 이루는 육체적 습관 속엔 지배관계가 각인되고 체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 간의 지배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몸이 특정한 사회적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과 행동들을 되풀이하여 스스로를 주어진 사회적 규율에 길들이기 때문이다.

(나) 오늘날 여성의 상품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대중문화의 흥행은 여성의 몸을 시각적으로 상품화하는 전략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성매매처럼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상품화되기도 하고 대리모나 난자 판매의 경우처럼 여성의 모성적 육체가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여성의 모성적 육체의 일부인 태반은 산모의 동의 없이 모성적 기능과는 별개의 용도를 위한 미용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여러 문화에서 결혼시장의 관행들은 신부를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라는 서비스의 일부로 몸을 전시하고 사용하도록 고용된 여직원들의 몸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의 일부가 된다. 상품화의 논리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여성의 몸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특정한 소비성향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오해나 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 바람직한 여성의 성격이나 자세 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들은 특정한 여성의 몸의 이미지에 대한 대중적 강박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강박증은 기호나 취향 등의 명분 속에 잘 가려진 채로 여성들의 생활 속에, 여성의 몸 위에 각인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은 타의에 의해 상품으로 대상화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상품화하기도 한다.

- ① 모성적 기능이나 성적 대상으로 환원된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것은 남
성지배의 아비투스 속에서 여성에게 특정한 몸의 개념 및 이미지가 강요
되기 때문이다.
- ② 일상에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원리로 교육되고 수용되고 실천되는
많은 것들이 남성지배의 아비투스를 재생산하면서 여성의 몸을 교환대상
이자 육체자본으로 인식하게 하는 성향들을 양산한다.
- ③ 남성지배의 아비투스는 의식적인 학습이나 이념적 강요를 통하여 평범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비현실적인 체형의 몸을 선망하게 만든다.
- ④ 남성지배의 아비투스가 재생산되는 이유는 여성이 강요된 몸의 이미지 및
환원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 ⑤ 아비투스과 몸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의 몸은 불균형적으로 구조화된 남
성지배체제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몸으로 생산된다.

8. 다음 글에 <보기>의 내용을 첨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물론 이 양자 사이의 관계는 패러디를 여러 유형들로 범주화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사실 패러디는 문학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패러디와 문학사는 그 성격상 동질적인 것이다. (ㄱ) 문학사에서 모든 개개의 작품은 결코 고립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시대의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다. 개개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이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획득된다. (ㄴ) 문학사의 이런 관계성과 연속성은 패러디에도 그대로 그 본질이 된다. 왜냐하면 원전의 풍자적 모방, 또는 희극적 개작으로 정의되는, 이런 문학적 문맥의 한계를 벗어나 다 문맥적·사회적 문맥에서 '과거와 비판적 거리를 가진 반복'으로 정의되는, 패러디는 패러디 '된' 작품 (또는 과거) 없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ㄷ) 패러디를 모방의 한 형식이나 비평의 형식 또는 문학의 형식, 심지어 '해석의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런 관계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이 관계성에 의하여 패러디는 예술의 연속성을 보증해 주며 따라서 문학사에 유추되는 것이다.

패러디와 문학사의 연관은 언제나 패러디와 장르 사이의 문제로 대체된다. 문학사의 전개란 새로운 단계마다 장르들이 재생되거나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ㄷ)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의 문학 장르는 선행 장르들을 가지고 있으며 장르의 변화란 주로 이런 선행 장르들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ㄱ) 장르는 패러디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정립되거나 변형되면서 문학사를 지행한다. 장르는 패러디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요컨대 패러디는 장르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 ① ($\neg$)

③ ($\sqsubset$)

⑤ ($\square$)

② ($\perp$)

④ ($\exists$)

9. 모순관계에 놓인 두 주장은 동시에 참으로 주장될 수도 없고 또한 동시에 거짓으로 주장될 수도 없다. (가)와 (나)의 주장이 서로 모순관계가 아닌 것은?

- (가) 새로 부임한 구청장의 키는 적어도 180cm는 된다.
(나) 새로 부임한 구청장의 키는 아무리 커봤자 180cm는 못 된다.
- (가) 이것의 모양은 동그랗다.
(나) 이것의 모양은 동그랗지 않다.
- (가) 이것은 질긴 실이다.
(나) 이것은 질기지 않지만 실이거나, 질기기는 하지만 실은 아니거나, 질기지도 않고 실도 아닌 것이다.
- (가) 소풍가는 유치원생들은 모두 노란 모자를 썼다.
(나) 소풍가는 유치원생들은 아무도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 (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조는 사람은 최소한 30명은 된다.
(나)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조는 사람이 많아야 30명도 안 된다.

10. 다음 각 글들과 이를 토대로 추론한 진술들 사이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음조와 색채와 형태는 기호가 아니어서,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지향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들을 엄밀히 그 자체로만 환원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가령 순수한 소리라는 개념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가 전혀 배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순수한 성질이나 감각이란 없다. 그러나 어떤 성질이나 감각에 깃들어 있는 어렴풋한 작은 의미, 가령 가벼운 기쁨이나 수줍은 슬픔 따위는 그것에 내재해 있거나 또는 그 주위에서 마치 아지랑이처럼 바르르 떨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의미가 바로 색채나 소리 그 자체인 것이다. 누가 꽃사과의 빛과 그 새콤한 기쁨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나) 화가는 그의 캔버스에 기호를 그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그가 붉은색과 노란색과 초록색을 함께 칠할 때, 그 집합체가 어떤 분명한 의미를 지녀야 할 이유,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물체를 또렷이 지시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기가 그 집합체에도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화가가 보라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택한 데에는, 비록 감추어진 것일망정 어떤 동기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창조된 물체는 그 화가의 가장 깊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체들이 화가의 분노나 고뇌나 기쁨을, 말이나 얼굴의 표정처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에는 도리어 그런 감정들이 배어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그 자체로서 무슨 뜻과도 같은 그 무엇이 깃들어 있는 색조 속으로 감정이 녹아들어 갔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뒤섞이고 흐려져서 이미 아무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다) 시인에게 언어는 외적 세계의 구조이다. 이에 반해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적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말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다. 말은 그의 감각 기관의 연장이어서, 말하자면 그의 집게, 안테나,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내부로부터 조종하고 제 몸의 일부처럼 느낀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언어라는 신체에 대해서 그는 거의 의식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그의 행동을 세계로 펼쳐나가게 한다. 그러나 시인은 언어 밖에 있다. 그는 말을 거꾸로 본다. 마치 자기는 인간 조건에 속하지 않는 존재인데, 인간 세계로 다가오니 우선 말이라는 장애물에 마주쳤다는 듯이 말이다. 시인은 먼저 이름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대신에, 우선 사물들과 무언의 접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말이라는 또 하나의 사물 쪽으로 돌아서서는 그 말들을 건드리고 더듬고 만져보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고유의 작은 광채를 찾아내고, 또 땅과 하늘과 물과 창조된 모든 것과의 독특한 유사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라) 한 선율의 의미 역시 선율 그 자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념들과는 다르다. 어떤 선율이 즐겁다거나 우울하다고 아무리 말해 보아도, 선율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넘어서거나 또는 그것에 못 미친다. 그것은 음악가가 우리보다 한결 풍부하고 다양한 정념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테마의 근원을 이루었을 그의 정념이 음조에 녹아들어서 그만 변질되고 흐려졌기 때문이다. 고통의 외침은 그 외침을 자아내는 고통의 기호이다. 그러나 고통의 노래는 고통 그 자체인 동시에 고통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마) 작가는 오막살이 한 채를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거기에서 사회적 부정의 상징을 보게 하고 독자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가는 말이 없다. 화가는 다만 하나의 오막살이를 보여줄 따름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자유이다. 그 고미다락은 결코 가난의 상징이 아니다

주) 고미다락 : 다락방

- (가) - 어떤 성질이나 감각에 대해서도 의미는 배어 있으나, 그것과 그것의 의미는 구분되지 않는다.
- (나) -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화가의 의도가 배어 있으나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 낼 수는 없다.
- (다) - 시인은 말을 마치 자신의 신체처럼 사용하면서 사물과의 관계를 발견해 내어 의미를 말에 담아낸다.
- (라) - 선율에는 정념이 배어 있으나 정념의 기호는 아니다.
- (마) - 화가가 그린 오막살이를 보고 감상자는 가난을 떠올릴 수도 있다.

11.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음을 눈치챈 각국 정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규제의 확대가 바로 그것인데, 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처럼 규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정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예산의 규모만 보고 정부부문의 크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대폭 늘게 되면 정부부문의 실질적인 규모는 예전에 비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를 놓고 정부부문의 비중을 비교할 때도 단순히 정부지출의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만을 보고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 지난 15년 동안의 통계에서 이 비율을 구해보면, 일본은 32.4%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32.9%로 이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정부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규제는 공공정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을 대상으로 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시행한 규제로 말미암아 민간부문이 저야 했던 비용이 1995년 한 해에만 6,68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고 한다. 그 해의 연방정부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한 가구당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7,000달러나 되어, 한 가구당 평균 소득세 납부액 6,000달러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이 비용의 수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수치에는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만이 고려되고 그 밖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생산성 저하 같은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실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제도는 각 정부부처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한 한도를 배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에 배정된 규제관련 비용의 한도가 2,000억원인데, 그 부처가 이미 도입한 규제로 말미암아 민간부문이 1,8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자. 이제 그 부처는 민간부문에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제약은 각 부처로 하여금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만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규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게 될지 명백히 드러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제로 대체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합당한 이유 없이 규제를 남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의 크기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된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 1995년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중 약 40%가 가계의 소득세 납부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규제예산제도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한도를 각 부처에 배정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 각종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비효율의 대 GDP 비율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12. 다음 괄호 속에 용어 A나 용어 B 중 어느 하나를 채운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물며 A는(은) 주인이요 B는(은) 손님이거늘, 오늘날 동양주의 제창자를 살펴 보건대 (㉠)는(은) 주인 되고 (㉡)는(은) 손님이 되어 나라의 흥망은 하늘 밖에 놔두고 오직 (㉢)를(을) 이같이 지키려 하니, 슬프다. 어찌 그 우미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런즉 한국이 영구히 망하며 한족이 영구히 멸망하여도 다만 이 국토가 황인종에게만 귀속되면 이를 낙관이라 함이 옳을까. 아, 옳지 않은 것이다. 혹자는 또 일컬되, 저 동양주의를 외치는 자도 진실로 (㉣)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주의를 이용하여 (㉤)를(을) 구하고자 함이라 하나, 우리가 보건대 한국인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를(을) 구하는 자는 없고 외국인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국혼을 찬탈하는 자가 있으니 경계하며 삼갈 것이다.

- A-B-A-B-A-A
- A-B-A-A-B-B
- B-A-B-B-A-A
- B-A-A-B-A-A
- B-A-B-A-B-B

13. 다음 글의 논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통한 출세는 지속적으로 증명되었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거듭되면서 교육의 사회경제적 보상 효과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점차 강화되었다. 교육회話が 신분의 철폐에 따라 확대되었고,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출세의 사례가 늘어났으며, 출세의 의미와 확장됨에 따라 교육의 보상 효과의 폭도 넓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들은 교육출세론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사이에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다.

〈 보기 〉

- ㉡. 문제의 뿌리는 어느 집단의 악이나 민족성, 또는 교육정책의 실패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쟁상황과 그 안에서 자율의지를 가지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 ㉢. 우리 사회가 우리의 높은 교육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적이고 도구적인 교육열로부터 공적이고 본질적인 교육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 사회가 급변하고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학력과 학벌이 취업 및 진급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준거로서 작용한다. 학력과 학벌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중요변수로 작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학연에 의한 인맥이 형성되고 학력과 학벌의 재생산효과가 상승하게 된다.
- ㉤. 전통적으로 승문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여 취업 및 소득 효과가 줄어들어 경우에도 학력과 학벌의 장식 효과 곧, 사회위세 또는 명예를 표시하는 효과는 줄어들지 않는다.
- ㉥. 교육열은 사회제도화된 교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려는 욕구로서 제도교육이 널리 발달함에 따라 더 좋은 교육기관을 더 많이 통과하려는 행위나 현상으로 나타난다.

- ① ㄱ, ㄴ, ㅁ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ㄴ, ㄹ
- ⑤ ㄱ, ㄷ, ㅁ

14. 다음 글의 내용상 가장 적절한 문단 배열은?

- (가) 이 개연성을 가로막는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모세를 시조로 하는 유대인의 종교와 이집트인의 종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의 종교는 엄격한 유일신교다. 이 종교에는 유일한 신이 있을 뿐이다. 그만이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신, 접근 불가능한 신인 것이다. 반면 이집트 종교에는 신격(神格)과 기원에 따라 무수한 신들이 있다. 하늘, 땅, 해, 달 같은 위대한 자연력을 의인화한 신도 있고 ‘진리’나 ‘정의’에 해당하는 추상적인 신이 있는가 하면 난쟁이 모습으로 회화한 신도 있다.
- (나)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가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해명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다. 한 민족이나 부족이 그 동아리에게는 실로 중대한 대사업을 벌일 경우, 그 동아리는 지도자를 세울 터인데 이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한 사람이 스스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과 동아리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발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귀족 신분의 이집트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 무리의 선두에 서게 하고, 이집트를 버리고 떠나게 만든 상황을 추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집트인들이 타국인들을 경멸했던 것으로 익히 알려진 것만 보아도 그런 이주의 형식은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이 이집트에서 온 것으로 인정하는 역사가들조차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는 분명한 개연성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 (다)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는 가설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설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유대인에게 배운 종교는 자신이 신봉하던 이집트 종교”라는 결론은 상호 모순되는 두 종교의 본질에 대한 우리들의 자각에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 (라) 이 같은 차이점 중 일부는 엄격한 유일신교와 자유분방한 다신교의 원칙적인 대비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도출될 수 있다. 다신교가 원시적인 단계에 가까운 데 견주어 일신교는 추상화를 통해 고도로 상승한 단계에 있었던 만큼, 영적이고 지적인 차원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상위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모세교와 이집트 종교의 대립은 의도적인 대립, 고의적으로 첨예화된 대립이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모세교는 모든 종류의 마법과 주술을 준엄하게 단죄한 데 견주어 이집트 종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풍부하게 축진되었다. 결과 둘과 급속으로 신들의 모형을 빚는 이집트인들의 탐욕스러운 미각은 살아 있는 것이나 상상 속의 물건을 빚어서는 안 되는 엄격한 금제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 (마) 이 첫 번째 난문제에 이어 다른 난문제가 꼬리를 문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 신앙을 강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한 사람이 타인의 종교에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그들을 자기의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이집트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형태의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마련해 준 모세가 이집트인이었다면, 우리는 그가 마련한 이 종교는 이집트 종교였다는 가정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 ① (가)-(나)-(다)-(라)-(마) ② (나)-(마)-(가)-(다)-(라)
③ (나)-(마)-(가)-(라)-(다) ④ (다)-(가)-(마)-(라)-(나)
⑤ (다)-(나)-(가)-(마)-(라)

15. 다음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1〉

영국을 중심으로 먼저 발전한 자본주의가 전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먹기 위해 농사를 짓던 제 3세계의 농민들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현금 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농민의 생활은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가공할 만한 힘은 북미 에스키모 지역에까지 과급되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에스키모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비버(beaver)를 잡아 그 고기와 가죽을 생필품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비버 가죽에 대한 서구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가격도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비버를 더 많이 사냥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였고, 몇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에스키모인들은 이대로 사냥을 계속하면 비버가 곧 멸종하여 자신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가죽조차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획량을 줄이지 않는데 자기 자신만 줄인다면 손해라고 생각한 그들은 계속 그대로 사냥을 했다. 마침내 에스키모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각자에게 사냥영토를 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비버가 서식지를 자주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냥영토를 정해 주면 자신들의 영토에서 비버가 멸종되지 않도록 사냥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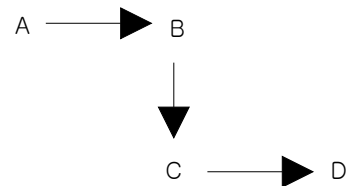
〈사례 2〉

1960년대 중반 일본의 토야마 항만(Toyama Bay)에는 어민 조합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한 어민들은 고기와 새우를 잡아 생긴 수입을 서로 나누어 갖고, 그물 수선비와 선박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들은 수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와 잡는 방법 등을 서로 가르쳐 준다.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은 최신 조음과 장비 등의 사용법을 다른 어민에게 가르쳐 주며, 선배 어부는 후배 어부에게 오랜 경험의 비법을 전수한다. 이처럼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것은 어민들로 하여금, 전혀 못 잡을 위험부담은 있지만, 더 많은 고기가 잡히는 곳으로 출항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의 공유는 어선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어획량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조합은 또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경우에도 차도 수입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사회보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다.

- ① <사례 1>은 공공재화에 대하여 사적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② <사례 2>의 어민조합은 사유재산을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체적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 ③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어민 조합의 규율은 어민들 간 수입의 격차를 감소시킨다.
- ④ 에스키모인들에 비해 어민조합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어민조합 구성원들 사이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어부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속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16. <보기>의 네 문장(ㄱ~ㄴ)을 다음 글에서의 ‘의미 관계’ 전개 과정(A-B-C-D)에 맞추어 배열한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인 텍스트의 의미 관계는 상위적, 하위적, 등위적 전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상위적 전개 과정은 화제(topic)가 전환되면서 의미의 위계 구조를 구성하고 확장하는 방식이며, 하위적 전개 과정은 의미 구조의 깊이(depth)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또 등위적 전개 과정은 의미 구조의 폭(length) 확장과 관련된다. 텍스트가 주로 하위적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깊이가 있는’ 글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텍스트가 주로 등위적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면 사실의 단순 나열로 인해 폭은 넓으나 깊이는 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텍스트는 ① 등위적 전개 과정에서 ② 하위적 전개 과정으로 연결되다가 다시 ③ 등위적 과정으로 흘러가는 구조이다.



—〈보기〉

- ㄱ.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은 지친 일상에 악센트를 주고 리듬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다.
- ㄷ. 그러나 사실 진정한 삶의 활력소는 노동으로 흘린 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 ㄹ. 휴가는 삶의 활력소이다.

- ① ㄱ-ㄷ-ㄴ-ㅈ ② ㄴ-ㄷ-ㄱ-ㅈ
③ ㄴ-ㄱ-ㄷ-ㅈ ④ ㅈ-ㄷ-ㄴ-ㄱ
⑤ ㅈ-ㄴ-ㄷ-ㄱ

20. 다음의 글은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보기>에서 순서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민주적’ 정부 체제가 슬로건 이상이 되기 위한 첫째의 요건은 _____. 원리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원리를 구체적 사대에 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그 두 가지 중의 어느 것보다도 다른 일이다. 오크쇼트(M. Oakeshott)가 말했듯이, “18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로크(J. Locke)의 『시민정부론』을 읽었을 때, 그것은 실행되어야 할 추상적 원리를 기술해 놓은 정치적 활동을 이끄는 서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책은 정치적 활동의 서문이기는 커녕 오히려 후기라고 보아야 하며, 그것이 정치적 활동을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그것이 실지의 정치적 경험에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책은 영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이끌어가고 하였는지를 추상적인 용어로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서, 영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습관의 명료한 청사진이다.”

민주적 생활방식에 필요한 둘째 요건은 _____. 민주적 생활방식이 현실로서 실현되려고 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선전이나 욕설로 타락할 것이며, 사람들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악당 내지는 구원받아야 할 길 잃은 영혼으로 취급할 것이다. 포퍼(K. Popper)는 “제도는 요새와 같아서 잘 짜여지고 인원도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원이란 것은 밤 사이의 우후죽순처럼 쉽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들은 막대한 교육적 사업으로 훈련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 생활은 그것 자체가 전통이며, 새로운 세대가 끊임없이 입문해야 하는 전통이다. 만약 이러한 합리성과 관용의 전통이 없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인 간판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셋째 심리적 요건은 _____. 이것은 포착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으로, 위에서 말한 두 요건과는 구별된다. 즉, 민주사회의 성원 중에는 행정적인 능력과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무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모종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압력을 받아야만 겨우 공직을 수락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아테네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공공 생활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이 없다. 즉, 우애라든가 동포애의 감정이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다든지 정부는 필요악이라고 보는 생각 자체는 일리가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동포애가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사람들이 ‘민주’라는 추상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ㄴ. ‘조언과 동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ㄷ. 공공 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ㄹ. 절차적 원리의 수준에서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ㅁ.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ㄱ-ㄴ-ㄷ
 ③ ㄴ-ㄹ-ㄷ
 ⑤ ㄱ-ㄷ-ㄹ

- ② ㄱ-ㄷ-ㄷ
 ④ ㄷ-ㄱ-ㄹ

21. 다음 <보기> 중 아래의 글이 의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인적판매는 판매원과 예상고객 사이의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매체광고의 경우 수백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함)과는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s)이 포함된다. 인적판매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소매상에게는 마케팅 지원을,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사용, (판매 후) A/S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판매는 대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고객이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다. 판매원이 고객 개개인에 따라 메시지를 차별화, 즉 고객맞춤(customization)이 가능하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므로 고객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유능한 판매원이라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판매활동이 효과가 있는가를 즉석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인적판매는 다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제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고객과 빈번하게 접촉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적판매의 주요한 단점은 한 번에 한 사람의 고객과 접촉하므로 다른 촉진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인적판매의 성과만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촉진 방법이지만, 그러나 비용을 대비한 성과로 평가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인적판매와 다른 촉진활동(광고나 판매촉진)에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촉진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보 기 >

- ㄱ. 인적판매는 판매원과 고객사이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대인적 커뮤니케이션이다.
 ㄴ. 인적판매는 다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고객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ㄷ. 인적판매의 성과가 다른 촉진수단에 비해 성과가 높으므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ㄷ

- ② ㄱ, ㄷ
 ④ ㄴ

2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토지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 첫째는, 농경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택지 등에서 보듯이, 일단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어떤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용도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는 상품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모지와 황무지를 포함해서 지표수, 삼림, 동·식물군, 빼어난 경관 등을 보유하는 토지는 여기에 어떤 인공적인 노력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삼림의 경우 관광·위락 가치를 지니며,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등 생태계의 영양분 순환을 유지시키는 기능, 수자원 함양기능, 대기 정화기능, 수질 정화기능, 토양침식 방지 기능 및 홍수피해 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를 총칭적으로 현장자원이라고 한다.

(나) 산업혁명 이래로 눈부신 기술진보는 상품자원을 이용한 생산물의 공급을 현저하게 증가시켜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농업 기술의 진보는 토지단위당 농산물 수확량을, 그리고 광·공업기술의 발달은 주어진 토지로부터의 각종 원자재의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켜 왔으며, 건축기술의 발달은 한정된 면적의 토지로부터 주거 및 상·공업 활동 공간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주었다.

(다) 현대의 고도의 기술 수준 아래에서도 제주도의 이색적 경관이나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에 대한 마땅한 대체재, 그리고 삼림의 대기 정화 기능에 대한 마땅한 대체재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기는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와 흡사한 다른 경치를 권한다거나 또는 제주도의 모조품을 다른 곳에 만들어서 이를 구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마치 미술 감상을 즐기는 사람에게 모조품을 권하는 것과 흡사하다.

(라) 정부의 한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국민관광은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급증하여 계속 증가일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 10년의 기간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시절이었다. 이 기간에 관광객의 수는 같은 기간의 우리 나라 1인당 GN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관광행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즉 관광동기에 있어서 1976년에는 피로·스트레스 해소가 63.6%로 비중이 높았으나 1981년에는 이 비율이 12.7%로 줄어든 반면에 자연명소 방문 및 자연경관의 비중이 45.4%로 크게 증가하였다. 관광계절의 선택에 있어서도 1976년에는 가을 38.9%, 여름 34.3%로 가을관광 및 여름피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반해서 1981년에는 봄 36.5%, 여름 29.2%, 가을 25.3%로 국민관광이 계절요인에 큰 관계없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 ① 현장자원의 수요는 매우 공급탄력적이다.
 ②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상품자원의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③ 현장자원의 가치는 상품자원의 가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④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현장자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현장자원은 상품자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진다.
 ⑤ 현장자원의 공급은 기술진보, 대체재의 개발 등을 통해서 크게 증가될 수 있다.

23.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와 나치 시대를 거치는 동안의 불행한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플랑크는 독일이 위대한 국가로 부상하던 그 황금시절에 그렇게도 확고하게 보였던 그 근본적 믿음들을 고수하였다. 그 시절에는 지적·사회적 삶, 국가에 대한 의무와 존경, 그리고 도덕적 명령들이 모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나중에 국가와 과학과 도덕은 각기 제 갈 길을 갔다. 세계의 질서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플랑크의 덕과 지식과 권위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닥쳐온 재난들을 피하게 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또한 세계 질서의 일부분이었던지도 모른다.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처음에는 불행이라고 탄식하던 사건이 나중에 더 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음이 밝혀질 수 있다. 그때는 우리의 탄식이 아마도 만족과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딜레마 중의 딜레마가 있다. 정언적 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행동은 거의 없다. 실제로 있어서 도덕적 행동은 사회적 경험들로부터 도출된 교훈들에 의해 이끌리며, 그 단기적·장기적 결과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 플랑크가 공직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그의 깨끗한 양심과 선의를 보존한 것이, 그가 나치들을 상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었는가? 그의 세계관은 그를 고귀하게 하였는가, 아니면 욕되게 하였는가?

- ① 나치 치하에서 플랑크가 보여주었던 행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쉽지 않다.
 ② 플랑크가 성장하던 시기에 독일은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시절에는 플랑크 개인에게 있어서 과학과 도덕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③ 플랑크의 인생은 딜레마의 연속이었다. 생애를 통해 그는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 등 자신의 인생관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④ 플랑크는 나치 치하에 공직에 남아 있으면서 최대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된다.
 ⑤ 플랑크는 높은 덕, 지식과 권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만년에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24. 다음의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국시기의 헌법상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 원칙에 의거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국내에서 총선거한 중앙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분담할 部는 內·外·軍·法·財·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를 둠.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공동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推行함>
 (가) 대생산기관의 工具 및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沼澤과 水上·陸上·空中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城市·공업 구역의 公用的 주요 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등기업은 私營으로 함.
 (나) 적의 侵占 혹은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 房産과 基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附屬者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貧工, 貧農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은 공영의 집단생산기관에 充供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私人の 고용농업제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農工大衆의 물질 및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自來水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電影, 극장 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工人과 農人の 免費醫療를 普施하며 질병소멸 및 건강보장을 勵行함.
 (아) 토지는 自力自耕人에게 分給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農人の 지위를 보아 저급에게부터 우선권을 줌.

- ①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 했다.
- ② 섬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섬을 지방자치의 한 권력으로 설정했다.
- ③ 대규모 생산기관 등에 대한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 ④ 특정계급의 독재를 배격한다.
- ⑤ 출판·극장 등의 문화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였다.

25. <보기>에서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적은 것들로만 묶여 있는 것은?

지난 세기말 영국의 윌버트 박사가 복제양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세계는 마치 경쟁이라든 하듯 인간 복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인지 종교계는 신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과학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으나 웬지 더 거대한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온 세상을 쑥밭으로 만들거나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제는 어디까지나 유전자 복제이지 생명체 복제가 아니다. 아무리 청기즈칸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가 청기즈칸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대한 정복자가 될 약간의 포악한 성격은 타고날 지 모르나 세상이 완전히 판판으로 바뀐 현대에 그가 제2의 청기즈칸이 될 확률은 거의 영에 가깝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를 여럿 복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남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복제인간은 출산 시간이 좀 많이 벌어진 쌍둥이에 불과하다.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만일 지금 나를 복제한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 뱃속에서 몇 십 년을 더 있다가 나온 쌍둥이 동생이 뒤늦게 태어난 것뿐이다. 몇 초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도 결코 똑같은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늦둥이 쌍둥이 동생이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이 될 리 없다. 유전자는 나와 완벽하게 같을지라도 그 유전자들이 발현하는 환경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유전자 복제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유전자 조작의 문제이다. 복제인간은 한두 번 만들어보다 시들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유전자 조작은 건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마구 뻗어나갈 것이다. 유전자의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내가 가진 결함들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알게 될 때 그 유전자를 보다 훌륭한 유전자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왜 일지 않았는가. 노화의 비밀이 밝혀져 다만 몇 개의 유전자만 바꾸면 몇 십 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 < 보 기 > —

ㄱ.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현재의 인간복제기술이 인간의 유일성과 일회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ㄷ. 현재의 인간복제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ㄹ.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복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쁜 일이다.
 ㅁ.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조작은 모두 유전자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ㅁ
- ⑤ ㄱ, ㅁ

2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신체의 감각으로부터 얻는 ‘느낌’과 개념적 사고로부터 얻는 ‘이성’을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느낌은 명료하게 정의내릴 수도 없고 명확히 분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언어야말로 이성의 초석이다. 즉 포유류와 어류, 삼각형과 원, 숫자 등의 개념은 언어가 마련해 준다. 그래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로서 다른 생물들과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존슨(Mark Johnson)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사상을 비판한다. 범주화는 언어가 마련해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생각되지만, 모든 생물이 사물을 범주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아메바도 자기와 마주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또는 다가가야 할 대상과 멀어져야 할 대상으로 범주화한다. 이런 범주화는 동물계의 모든 층위에 적용된다. 동물들은 음식, 약탈자, 가능한 짝, 자신들의 종에 소속된 동물 등을 범주화한다. 동물들이 범주화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감각기관과 이동능력 및 대상 조작 능력에 의존한다.

인간이 사물을 범주화하는 일도 신체화되어 있는 방식의 한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범주화는 의식적인 사유작용의 산물이 아니다. 범주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인간은 신경을 가진 존재로서, 두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체가 있다. 정보가 뉴런들이 뿔뿔이 들어 찬 한 집합에서 비교적 드문드문 있는 연결체들의 집합을 통해 다른 집합으로 보내지는 것은 두뇌에서 흔한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뉴런들의 첫 번째 집합에 대해 분산되는 활성화의 패턴은 너무 커서 드문드문 있는 연결체의 집합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표상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드문드문 있는 연결체들의 집합은 어떤 입력 유형들을 출력 집합에 사상할 때 그 유형들을 반드시 분류해 놓는다. 한 뉴런 집합이 다른 입력들을 동일한 출력에 제공할 때마다 신경망의 범주화가 존재한다.

범주들 중 소수만이 의식적인 범주화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주는 세계 안에서 기능화의 결과로서 자동적·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로운 범주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재범주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범주 체계에 대규모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범주화 방식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통제하지도 않고 또한 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범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무의식적 범주들은 모든 의식적 범주들의 선택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 ① 모든 생물은 사물을 범주화한다.
- ② 인간이 이성으로만 사물을 범주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인간은 의식적인 재범주화를 통해서 동물과 변별된다.
- ④ 아메바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과 인간의 이성은 정도의 차이이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 ⑤ 인간이 인간의 범주화 방식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사회의 주류적인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이단적 견해를 가진 당사자에게보다는 그러한 통제를 지켜보는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더 크다. 앞날이 촉망되지만 성격이 소심한 지식인은 독창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처벌되는 것을 목격하면 처벌이 무서워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리고 주류적인 생각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위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은 스스로 결코 침묵시킬 수 없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지성을 케번으로 기만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보낸다. 자신의 양심과 지성을 정통 학설과 조화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은 소진된다. 이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자신의 양심과 지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속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고뇌를 거치지 않고 획득하는 진리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낸 오류에 의하여 진리는 발전된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대한 사상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오류투성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낸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하는 데에 있다. 원칙이 논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관습이 있는 곳에서,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억압된 곳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활동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견해도 사실은 오류일 수 있다는 가정을 무시하고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견의 소유자는 그러한 자신의 의견이 어찌면 오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다음의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 자신의 의견이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토론의 도마 위에 올려진 적이 없다면 설령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있는 진리라고 할 수 없으며 죽은 독단으로서 지지되는 진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죽은 진리보다 살아있는 오류가 인류에 더 공헌한다.
 ㄴ. 원칙이 논박되지 않는 선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
 ㄷ. 위대한 사상가를 낳는 사회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이다.
 ㄹ. 믿을 만한 지식인의 견해에 의지하기보다는 오류투성이라도 스스로 생각해 낸 견해를 더 중시하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는 좋은 사회이다.
 ㅁ. 토론으로 도전 받지 않은 진리는 그것이 옳더라도 죽은 진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ㅁ
- ③ ㄱ, ㄹ, ㅁ
- ④ ㄱ, ㅁ
- ⑤ ㄴ, ㄷ, ㅁ

28. 다음은 인간의 사고 과정에 관한 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서 이 입장과 가장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은?

(가)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다. 마오리족의 지도자이든지 현대의 벤처사업가이든지 지각, 기억, 인과분석, 범주화, 그리고 추론 과정에 있어서 동일하다.

(나) 만일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신념체계가 다르다면,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다른 측면을 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다른 내용을 교육받았기 때문이지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다) 인간의 사고 과정 자체는 사고의 내용과 분리될 수 없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사고방식을 사용한다.

(라) 고등 추론과정은 논리학의 형식 논리에 따른다. 예를 들어 모순된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추론은 형식 논리의 모순율에 따른다.

(마) 통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특정 분야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론 방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9.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음악이 일종의 언어라는 말들을 자주 하지만, 분명 음악은 프랑스어, 줄루어나 미국 수화화 같은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다. 음악은 아마도 감정의 상태라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결혼식을 상징하기 위해 결혼행진곡을 연주하는 것에서 보듯이 때로는 상징적이다. 그러나 음악은 수화를 포함한 모든 표준적인 언어에서 발견되는 문법적, 표현적인 가능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음악에는 단어도 없고 음절도 없고 명사나 동사, 복수형이나 시제 같은 것도 없다. 음악은 사람이 나 몰래, 행동에 이름을 부여할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도 없고, 질문을 던지거나 지시를 내릴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온 그런 의미의 언어로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음악을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음악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한다. 어떤 음의 연속이 우리에게 하나의 멜로디로 이해되고 음악으로서 이해되는 것은 왜일까? 모든 음의 집합이 음악처럼 들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33rpm의 레코드를 78rpm으로 튼다든지 혹은 시디(CD)를 빠르게 돌리기를 하면 그저 무수한 따따따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음악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악보를 거꾸로 놓고 피아노로 연주하면 이것도 역시 음악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첫째로, 그런 것을 듣는 데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논의를 상기해 본다면 그런 답은 너무 안이한 답인 듯하여 수상쩍다. 문제는 단순히 무엇이 습관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어떤 곡조를, 가령 Happy Birthday 같은 것을, 생전 처음 듣는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똑같은 곡조를 거꾸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연주한 것을 듣고서 앞의 경험과 비교해 보라. 처음에 들은 노래는 한 번만 들어도 짜임새 있는 곡조로 들릴 것이며, 두어 번 들은 후에는 아마 허밍으로 따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이것을 Yadhtrih Yppah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저 괴상한 음을 모아놓은 듯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허밍으로 따라 부르기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차이는 Happy Birthday는 우리에게 익숙한 음의 형식에 합치하고 Yadhtrib Yppah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후자는 리듬이 모두 불규칙하고 멜로디의 진행이 불분명하며 끝나는 부분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형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전에 들었던 특정한 음악에 대한 기억일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는 이 멜로디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가. 그보다는 차라리, 이 형식이란 것은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 모든 음악에서 끌어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형식을 앞으로써 우리는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Happy Birthday를 처음 들을 때라도 연주하는 사람이 틀린 음을 내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틀린 음은 그 음악의 스타일에 따른 멜로디나 화음의 형식을 어기기 때문이다. 혹은 잘 아는 곡을 재즈로 편곡해서 각각의 연주자들이 코러스를 돌아가며 연주하게 되어 있는 곡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라. 물론 그들은 그 곡조를 정확히 그대로 연주하지 않는다(그러면 그것은 재즈가 아니리라). 그보다는 차라리 연주자들은 화음과 리듬과 멜로디의 구조 면에서 그 곡과 관련 있는 무언가를 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련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떻게? 의심할 바 없이 원곡의 형식과 여러 독주 코러스의 형식을 직관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식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때 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그래, 잘 맞는군”이라든지 “좀 이상한데” 등이 고작이다. 음악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들 형식 자체는 무의식적이다.

여기서 언어와의 유사성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 즉 음악을 음의 연속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 듣는 능력은, 여러 가지 음악적 형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형식을 사용하여 음악을 체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음악적 형식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곡조를 아는 것과도 상관이 없으며, 같은 스타일을 가진 무한히 많은 수의 새 곡조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반면에 Yadhtrib Yppah는 이들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진다.

- ① 어떤 음의 연쇄가 음악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을 듣는 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우리는 어떤 음의 연쇄이든 두어 번만 들으면 허밍으로 따라 부를 수 있다.
- ③ 어떤 곡을 재즈로 편곡해서 여러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우리는 이것과 원곡을 의식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것과 원곡과의 관련성을 알아차린다.
- ④ 익숙한 스타일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음악으로서 인식하는 우리의 능력은 이 스타일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는 무의식적인 음악적 형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 ⑤ 음악은 수화를 포함한 표준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표현적 가능성이 풍부하다.

30. 다음 네 개의 글에서 암시된 진리 추구 방식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 학생 성환은 $2+2=3$ 이라고 주장하고, 학생 세진은 $2+2=5$ 라고 주장한다. 둘은 서로 자기의 답이 옳다고 한참을 주장하다가, 결국 같은 반의 우등생인 해원에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나) 김구의 『백범일지』에 보면, 레닌이 임시정부에 40만 루블의 독립 운동 자금을 주었는데, 이 돈을 공산주의자인 김립이 빼돌려 공산당을 위해 써버렸다는 주장이 나온다. 님 웨일즈의 『아리랑』에서 김산은 레닌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공산당 인민회의의 준비위원회에 총 50만 루블의 공작금을 주었다고 말한다. 이 중 30만 루블은 운반 과정에서 비적들에게 약탈당했고, 나머지 20만 루블은 인민회의의 준비위원회에 전달되었다. 그런데 인력거를 타고 가던 김립이 임시정부 측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고, 남은 돈은 임시정부가 가로챘서 써버렸다고 되어있다. 상반된 주장에 당황한 역사학도 같은 한국 현대사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다) 살인 사건을 조사 중인 형사 영란에게 두 명의 혐의자, A와 B가 인도되었다. A는 B가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B는 정반대로 A가 살인자라고 주장한다. 둘을 대질시켰으나 서로 언성만 높아질 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형사 영란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었던 200명의 증인을 모두 불러들였다.

(라) 수학자 승현은 인간의 두뇌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했다. 컴퓨터는 수학자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 문제의 답을 제공해 주었다. 수학자는 환호성을 올렸다. 그리고 이내 당황하게 되었다. 슈퍼 컴퓨터의 계산 결과를 검산하기 위해 그에게는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그는 이미 가장 좋은 컴퓨터를 사용해 버린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보다 더 좋은 컴퓨터가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일 뿐이었다. 일 년 후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개발되었고, 그는 일 년 전의 결과를 검산하기 시작했다.

- ① 2500년의 서양철학사를 통해 어떠한 철학도 논박당하지 않았다. 논박당한 것은 특정 철학의 원리가 아니라, 단지 이 원리가 마지막 원리이고 절대적 규정이라는 주장이었다.
- ②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있지 않다고 할 때, 나는 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할 때, 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 ③ 나는 유일하게 옳은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해석과 다른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때, 해석되어진 사실 자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해석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말하자면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A 경제 연구소와 B 경제 연구소의 상이한 해석을 접하고,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냐고 C 경제 연구소에 문의하는 경우와 같다.
- ④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이해하는가? 이해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유 내용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이식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이해는 불가피하게 언어라는 불완전한 전달 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언어를 통해 이해한 것이 정말 그가 사유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물론 내가 직접 그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시 '내가 옳게 이해했는지'를 그에게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전달로 불완전한 전달을 보완하려는 시도이며, 따라서 그 시행이 아무리 많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성에 도달할 수는 없다.
- 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 지식이 진보하는 방식, 특히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진보하는 방식은 정당화되지 않는, 그리고 정당화될 수도 없는 기대, 추정,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 추측 등에 의해서이다. 이런 추측은 비판에 의해 통제되는데, 비판은 엄격한 시험을 포함하는 기획된 논박이라 할 수 있다. 추측들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추측이 아직 틀리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그것들은 결코 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결코 확실한 참으로 확립될 수도 없고, 또한 확률 계산의 의미에서 개연적인 것으로 확립될 수도 없다. 혼한 통념, 즉 과학은 관찰에서 이론으로 나간다는 신념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어떠한 이론의 개입도 없는 순수한 관찰은 없다. 관찰은 항상 선택적이기 때문이다. 즉 관찰은 이미 선택된 대상, 한정된 과제, 탐구자의 관심, 관점, 문제들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는 결코 딱정벌레를 수집하듯, 실재를 수집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설의 최후의 검증이란 공허한 이상일 뿐이고, 가설과 검증된 이론의 차이는 없다.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우리는 엄격한 비판을 통해 틀린 추측을 제거해 나갈 뿐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은 성장한다. 우리의 지식은 성장하므로, 여기서 이성에 대한 절망에 빠질 이유는 없다.

31.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민속놀이로는 남정네들의 동체싸움과 아낙들의 뽕다리밟기가 있다. 현재는 제각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수하면서 민속축제 때 선을 뵈는 정도이다. 이들 놀이는 놀이 주체의 남녀, 놀이 방식의 음양, 놀이 시기의 낮과 밤 등으로 서로 대조적이긴 해도 한결같이 정월 대보름 때 하는 풍년기원의 놀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농경사회에서 패를 갈라서 하던 놀이를 현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기능보유자도 지정되어 있고 이를 전수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나 현대적 계승보다는 최소한의 전수 구실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의 현대적 계승에 관해서는 한층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놀이기도 탈춤처럼 그대로 재현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맞게 재구성해야 현대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뽕다리밟기를 할 때에도 공주를 뽑아서 공주만 뺄아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옆드려서 밟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밟히는 사람들도 끌고루 다 뺄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민주적이다. 이 놀이의 본디 양식도 공주만 밟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공민왕이 몽진한 이후부터였다. 현대적으로 계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새롭게 변형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변질된 후대적 양상을 본디대로 돌이키는 것도 민주적 계승이자 현대적 변용이다. 그리고 뽕다리밟기 외에 실감기와 실풀이, 얼얼이청청, 꼬리따기, 대문놀이, 공심기, 청어장사 등 여흥놀이도 함께 되살림으로써 밟기 형식의 단순하고 지루한 놀이에 머물지 않고 신명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본래의 흥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라져 버린 민속문화의 현형을 총체적으로 되살려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꾸며서 하는 가짜 민속이나 구경거리를 위하여 조작된 민속도 현대적 계승이라 할 수 없다. 본래대로 놀이하는 사람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종교 수술회의 의미와 세시풍속에 입각한 전승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 때나 동원되어 동체싸움을 하고 어디서나 하회탈춤을 추는 것은 민속문화를 값싼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문화재로서 품위를 잃게 하는 일이다.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장소에서 볼 수 있어야 문화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승의 의미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학생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동체싸움처럼 지도자의 일정한 연출 아래 놀이가 진행되고 사전에 정해 놓은 대로 승부를 낼 뿐 아니라 한결같이 연습한 대로 용의주도하게 보여주는 것도 현대적 수용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승부를 겨루고 그 승부에 따라 반대급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적어도 놀이하는 동체꾼들이라도 신명풀이를 할 수 있다. 관광자원으로 간주하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경거리로서 민속을 복원할 것이 아니라 민속을 전승하는 주체가 본디대로 민속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용과 변용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① 동체싸움이나 뽕다리밟기는 전통 민속놀이로서 현대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전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뽕다리밟기 등 전통놀이도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맞게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③ 동체싸움 등의 전통놀이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민속문화는 현대적으로 계승할 때에 본디 전통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시기를 뛰어 넘는 복원도 가능하다.
- ⑤ 민속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승주체들이 신명을 가지고 이에 종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32. 다음의 추리들은 잘못된 추리들이다. 같은 방법으로 반박될 수 있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필요가 없다.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공부할 테니까. 게으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은 효과가 없다. 그들은 어차피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장학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불필요하고 게으른 학생에게는 효과가 없으므로 장학제도는 없어야 한다.

(나)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쟁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거나 발전을 못하거나이다.

(다) 남자가 독신이라면 그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만약 그가 기혼이라면 그는 처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는 결혼을 해야 하거나 독신으로 지내야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차피 불행할 수밖에 없다.

(라) 만일 네가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것이고, 만일 네가 옳지 않은 말을 하면 신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옳은 말을 하거나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차피 사람들의 미움을 받든지 신의 미움을 받든지 할 수 밖에 없다.

(마) 사람들이 착하다면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악하다면 그들은 법망을 피해서라도 악행을 저지를 것이기에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은 불필요하거나 악행을 막지 못하거나이다.

- ① (가), (나), (다) ----- (라), (마)
- ② (가), (나), (마) ----- (다), (라)
- ③ (가), (라), (마) ----- (나), (다)
- ④ (나), (다), (라) ----- (가), (마)
- ⑤ (다), (라), (마) ----- (가), (나)

33. 다음 (가), (나)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공통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아, 재목으로 쓸 나무는 보면 쉽게 드러나고, 판단하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세 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재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겉으로 후덕해 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 본심을 알 수 있겠는가? 말을 들어 보면 그럴 듯하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 보이고 세세한 행동까지도 신중히 하므로 우선은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큰일이나 중대한 일에 당하여서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 국가가 망하는 원인으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가 자랄 때는 짐승들에게 짓밟히거나 도끼 따위로 해를 받은 일이 없이 오직 이슬의 덕택에 날로 무성하게 자란다. 따라서 마땅히 굵은 데 없이 곧아야 할 텐데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이처럼 쓸모없는 재목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요즘 같은 세상살이에 있어서이겠는가? 물욕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천성을 굽히고 당초에 먹은 마음에서 떠나고 마는 자가 많다. 때문에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다.’

장씨가 이러한 생각을 내게 전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대는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서경』 ‘홍범편’에 오행(五行)을 논하면서, 나무를 곡(曲)과 직(直)으로 설명하였습니 다. 그렇다면 나무가 굵은 것은 재목감은 안 될는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공자(孔子)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요행히 죽음만 모면해 가는 것이다.’ 하였습시다. 그렇다면 정직하지 못한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요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굵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리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큰 집의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공(公)과 경(卿)과 대부(大夫) 그리고 사(士)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궁전에 드나드는데, 그 중 정직한 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굵은 나무는 쓰임을 얻지 못하는데, 사람은 정직한 자가 버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옛말에 ‘곧기가 현(絃)과 같은 자는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곧기가 구(鉤)와 같은 자는 공후(公侯)에 봉해진다.’고 하였습시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굵은 나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나) 본래 그물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꿰어 놓는 버리가 있고, 그 버리에 매달린 그물의 눈, 곧 그물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물은 그물코가 없이 혼자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물코도 버리가 없이 스스로 펼쳐질 수가 없습시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협조하여 그 질서가 문란하지 않아야만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버리와 코가 서로 잘 조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낡고 찢어져서 못 쓰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 계의 발가락에 찢기고 좀벌레나 쥐의 이빨에 의하여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올이 가는 그물코가 먼저 헤어지지만 나중에는 버리도 따라서 못 쓰게 되지요. 결국에 가서는 마치 밧 없는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헤어진 그물코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여 내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쓰게 된 그물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서는 마당에 펼쳐 놓고 찢어진 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손볼 곳을 검토한 뒤에 천천히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하나하나 헤어진 것을 찾아 집습시다. 맨 처음 문제가 되는 버리부터 고치고 다음에 그물코를 하나하나 기워 나갑시다. 곧 끊어진 곳은 잇고 낡은 것은 보충하여 며칠만에 완전히 고쳐 놓습시다. 그러면 그것을 못 쓴다고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새것처럼 된 그물을 보고는 감탄하여 부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본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안 내가 그 물건을 고치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심하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주인 어른께서 버리겠다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이 그물을 수리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면 이 물건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또 비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더라도 평범한 종들에게 수리를 맡겼다면, 이 그물은 잘못 손질되어 도리어 더 못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수리한 그물은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며 잘 간직해서 헤어지면 바로 집되, 평범한 종들에게 수리를 맡기지 않는다면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감탄하면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의 말은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시사하는 바 크구나. 오늘날, 그물의 버리, 그물코와 같은 기강이 어느 것 하나 해이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이해진 기강을 보며 이제 더 이상 구체화 만한 희망이 없다고 내버려두고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혹 희망을 가지고 그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평범하고 옹졸한 종이 그물을 버려 놓듯이, 오히려 나라의 법도와 기강을 해치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마치 정군처럼 생각을 가다듬고 천천히 손볼 곳을 찾아서 얼굴빛이나 말에 자신의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 일의 순서를 찾아 해이해진 기강을 정돈하는 자는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돈한 기강을 날마다 애써 지키며 그것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자는 없을까?’

- ① 부유한 세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②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등진 채 자기만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라 고 있다.
- ③ 혼탁한 시대에 능력있는 인재가 등용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 ④ 무사안일에 젖어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관리들의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 ⑤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34. <보기>의 단락을 다음 글에 넣는다고 할 때 글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곳은?

- (가) 비록 몇몇 중요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이든 고국한 '차고의 발명자'이든 간에, 덩치가 작은 것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다(적어도 이것은 미국의 주요 연구소 관리자 16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인데, 그들은 모두 유니언 카바이드나 제록스 같은 대기업 출신으로서, 1967년 봄 존슨 대통령과 미 의회에 기술혁신에 관한 보고를 했다). 한 사례를 인용하면, 알루미늄 생산 프로세스에 있어 7개의 큰 혁신 중 오직 한 개만 대기업에서 나왔다. 나머지 6개는 주로 개인들 또는 소기업들의 연구로부터 나왔다.
- (나) 그렇다면 규모가 큰 기존의 회사는 새로운 것, 작은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대체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가장 생산성이 낮은 연구 환경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로서, 거의 원칙적으로 그것은 '대규모 연구소'다. 규모가 큰 대학의 연구소든 대기업의 연구소든 간에, 오늘날 미국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과학자 및 기술자 중 비록 5분의 4 정도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진식과 신제품 전체에서 그들이 기여한 몫은 분명 5분의 1도 채 안 된다.
- (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세법은 기존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기업에 자본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 세법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껏 고안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도다.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기업이 덩치를 더 키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트러스트주의자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세법은 결국 그들을 좌절시키고 만다. 배당금으로 지급된 기업이익에 대한 이중과세(기업의 법인세로 한 번, 그리고 배당금을 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또 한 번)는 기존의 기업에, 그리고 특히 기존의 대기업에 자본이 유보되는 것이 유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떤 주주의 총 수익이 연 8,0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는 자신의 투자자본에 대한 회수방법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기보다는 자본소득 증가 형태(배당금만큼 주가가 상승된)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그 유보금을 회사를 위해 재투자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전체 경제에 투입된 자본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신규 참여자, 즉 중소 유망기업과 개인 혁신자에게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라)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역사가 오래 된 큰 기업들이 스스로 생존해 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세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규 중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1930년대의 그 많은 '거대기업들'이 오늘날 아예 사라졌거나 미미한 존재로 전락해, 40년(또는 심지어 2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신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섭리가 영원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체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 보 기 〉

기술혁신이 활성화되고, 빠르고,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시대에는,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자본의 조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혁신에 투입된 매 1달러마다 혁신의 결과를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로 개발하는 데 10달러씩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신제품이 단 1센트라도 이익을 내기까지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한층 더 많은(연구에 투자된 매 1달러에 대해 100달러에 가까움)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 ① (가) 단락의 앞
② (나) 단락의 앞
③ (다) 단락의 앞
④ (라) 단락의 앞
⑤ (러) 단락의 뒤

35.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루소는 양심의 두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루소는 양심을 ‘자연적 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한 본능이며 천상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양심의 두 양상은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루소에 따르면 ‘이성의 최선적 사용’은 이 두 가지 양상을 양립 가능하게 하며 조화시킨다.
- 사람이 ‘이성의 나이’에 도달하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을 알게 되면 자연적 충동으로서의 양심이 인간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게 된다. 이 때 이성은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에 대한 관념을 명확히 해주고 양심을 계몽시킨다. 팽창하려는 영혼의 존재 확장력으로서 양심은 인간의 존재를 확장시켜 인류 전체를 포섭하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공동 존재감을 느끼게끔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심은 ‘인간적 정의(human justice)’의 원천이다. 자연적 충동으로서의 양심은 한 개인을 그와 동류의 인간과, 나아가서 인류와 관계를 맺게 하나, 이러한 양심은 한 개인을 ‘자기 존재의 창조자’와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인간의 이성은 ‘최고의 존재’, 즉 ‘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 완전하게 된다. 이성의 최선의 사용은 다름 아닌 신에 대한 명상인 것이며, 그 결과 인간은 옳음과 그름에 대한 절대적 관념을 갖게 된다. 이때 ‘자연적 충동으로서의 양심’은 ‘신성한 본능이며, 하늘의 목소리인 양심’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목소리인 양심’은 ‘신의 목소리인 양심’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양심은 ‘신적인 정의(divine justice)’의 원천이 된다.
- 이성의 최선적 사용이란 ‘사고과정의 정교화’나 추상적 사고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최선적 사용은 다름 아닌 양심을 계몽시키는 데 놓여 있으며, 더욱이 모든 인류에 희망을 북돋워 주는 것이 이러한 계몽이 약간의 유용한 지식을 겸비한 모든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옳음과 그름에 대한 관념은 이성의 최선적 사용이 행사될수록 더욱 명확해지며, 이성의 최선적 사용과 함께 신의 목소리인 양심이 우리 영혼에 견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 < 보 기 > —

- ㉠. 위 글에서 살펴 본 양심의 발생학은 우리의 도덕성이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 양심발생의 자연적 기원은 양심이 어디서부터 연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양심발생의 신적 기원은 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 자연적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옳음과 좋음을 사랑하게 만들며, 이것은 우리를 옳음과 좋은의 창조자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인도한다.
- ㉣. 신의 목소리로서의 양심은 팽창하려는 영혼의 힘이 지향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 ㉤. 팽창하려는 영혼의 힘으로서의 양심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장시켜 남을 포용하게끔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36. 다음은 아인슈타인의 사고와 창의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글의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글은 어느 것인가?

아인슈타인은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개념의 조작, 즉 개념들 사이에 공고한 기능적 관계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들에 감각 경험을 배분하는 것이다.”

사고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말은 헬름홀츠가 1894년에 쓴 「우리의 감각 인상의 기원과 바른 해석」에서 사고에 대한 분석과 거의 똑같고, 시각 이미지가 <개념>이라고 한 말은 1897년의 볼츠만의 정의와도 같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관점은 헬름홀츠의 관점과 두 가지 본질적인 이유에서 다르다. 첫째, 아인슈타인에게 사고는 <개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것>이고, 이것은 푸앵카레의 관점과 비슷하다. 둘째, 감각 경험과 개념 사이의 관계 조정은 감각 데이터 또는 실험 데이터와 정확한 물리 법칙 사이에 놓여 있는 심연을 직면의 왜 땀 흘려 노는 것으로써만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창조적 사고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는 경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놀라워할’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은 <놀라워한다>는 말의 뜻을 최대한 정교하게 했다. 놀라움은 <어떤 경험이 이미 우리 속에 충분히 정착된 세계 개념과 충돌할 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대어섯 살 때 나침반을 보고, 바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이 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을 <놀라워한> 기억을 회상했다. 이 이미지는 그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그는 물리학을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기초한 것과 같은 장이론으로 정식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장이론은 접촉에 의한 작용을 추상화한 것이다.

직관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세 가지 정의는 <놀라움>이라는 말의 용법에 모두 융합된다. 아인슈타인이 직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복사의 존재와 구성에 관한 우리의 직관의 발전에 관해」(1909)에서였다. 소재목이 보여 주듯이,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빛의 파동론과 자기가 1905년에 발표한 입자론, 즉 광양자론 사이의 직관의 괴리를 다루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뉴턴 역학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두 이론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 ①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시공이론인 상대성이론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은 뉴턴 역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 ② 아인슈타인은 특정 경험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존 개념과 충돌을 할 때 놀라움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 ③ 아인슈타인에게서 창조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인 것이었다.
- ④ 아인슈타인의 사고에 대한 생각은 헬름홀츠, 볼츠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푸앵카레의 관점과 비슷한 측면이 더 많다.
- ⑤ 실험데이터와 정확한 물리법칙 사이에 모순이 나타날 때 직관 및 시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사고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태도와 유사하다.

37. 다음의 세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각각 참인가 거짓인가?

국회의 어느 공무원도 소설가가 아니다.
모든 소설가는 국회 공무원이다.
어떠한 소설가도 국회 공무원이 아니다.

- ① 두 번째 - 거짓, 세 번째 -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 ② 두 번째 - 거짓, 세 번째 - 거짓
- ③ 두 번째 -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세 번째 - 거짓
- ④ 두 번째 -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세 번째 -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 ⑤ 두 번째 - 참, 세 번째 - 거짓

38. 다음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여전히 남성은 여성보다 더 높은 경제활동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급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남성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981년에는 45~54세의 남성의 98%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1997년에는 그 수치가 91%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격차의 축소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다.

(나) 최근에 남성과 여성 간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여성 그리고 ‘가정의 영역’과 관련된 범위와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젊었을 때 임금 노동에 참여하고 아이를 가진 후에 다시 일을 한다.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전에는 어린 자녀를 위해 가사에 소비했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가사노동의 기계화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쉴까 할 시간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자동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세탁기는 가사일을 덜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여성들이 아직도 남성보다 더 많은 가사일을 담당하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가사 분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

(다) 가장 중요한 증가는 기혼 여성에게서 이루어졌다.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든지, 3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여성의 60%가 보수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편모의 수치는 상당히 낮아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를 가진 편모의 36%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라) 또한 금전적인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영국에서 남성 가장, 여성 주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이 이제는 가족의 1/4에 불과하다. 남성 실업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구에 가해지는 경제적 압력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보수가 주어지는 고용을 찾게 되었다. 많은 가구들이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모 가정의 증가와 독신과 무자녀 가정의 높은 비율을 포함하여 가구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구 이외의 여성들이 선택에 의해서든지 필요에 의해서든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게 하였다.

(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요한 영향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경험한 노동력 부족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여성이 이전에는 배타적인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대부분의 일들을 남성들이 차지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 성적인 분업이 극적으로 변했다. 1945년에 여성이 전체 노동력의 29%만을 차지했다면, 1971년에는 반 정도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1997년에는 영국에서 30~45세 여성의 75% 이상이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것은 여성들이 소득이 있는 일을 하거나 일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가)-(다)-(마)-(나)-(라)
 ② (나)-(라)-(가)-(마)-(다)
- ③ (나)-(라)-(마)-(다)-(가)
 ④ (마)-(다)-(가)-(나)-(라)
- ⑤ (마)-(다)-(라)-(나)-(가)

39. 다음 글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관한 것이다. 논리 전개상 가장 적절한 문단 순서는?

(가) 조공책봉체제에서 중국은 중화, 곧 문명의 중심을 표방하면서 중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8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각국이 모두 자국을 중화로 자처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은 청조의 여진족이 문화적으로 열등한 종족이었다고 해서 중국 한족이 이룬 중화의 문명은 이제 조선에서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 중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야말로 바로 중화라고 했다. 월남도 19세기 초에 중화를 자처하면서 주위국들을 상대로 조공책봉체제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청조 자체도 중화의 해석을 새로이 시도한 점이다. 즉 옹정제는 문무가 온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곧 중화라고 하여 한족이 문덕, 여진족이 무공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나) 동아시아 3국은 서로 자국 중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19세기 초반부터 서양 열강국이란 손님을 맞게 된다. 이 손님들은 기계문명의 위력, 국민국가로서의 단위성, 그리고 국제관계의 룰 등으로 무장된 힘센 존재였다. 이 손님들은 우세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그들이 만든 국제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압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동아시아 각국은 전통적 조공책봉체제의 구심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각국 중화주의의 어떤 새로운 물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손님들의 방식에 그냥 끌려가는 형세를 면치 못했다. 한 시기의 낙후성이 비싼 값을 치르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다)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를 부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체제는 북방민족으로부터, 또는 일본으로부터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의 질서로서 장기간에 걸쳐 존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심이 한족이 아닌 북방족으로 바뀐 경우는 있었지만, 이 체제가 뒤엎어지거나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 적은 없다. 그것은 유럽 중세의 신성로마제국 체제에 견줄만한 규모와 지속성을 가진 것이다. 다만, 신성로마제국 체제에 비해 주체의 일방성이 훨씬 강한 차이가 있지만, 국제질서로서의 기능성은 비슷하였다.

(라)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신성로마제국은 해체의 방식으로 국제법을 만들어간 반면, 동아시아의 각국 중화주의는 국가간의 개별의식, 독존의식이 높아져 가면서도 새로운 관계의 틀이나 룰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었다.

(마) 중화에 대한 각국의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각국 중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가 무너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의식상으로는 그랬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시기가 바로 신성로마제국의 해체기와 오버랩된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신성로마제국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해체의 방식에 대한 기본 합의를 보고, 19세기까지 때로는 폭주하듯이 때로는 느린 속도로 해체가 진행되었다.

- ① (가)-(나)-(다)-(라)-(마)
 ② (가)-(나)-(마)-(라)-(다)
- ③ (가)-(마)-(나)-(다)-(라)
 ④ (나)-(마)-(라)-(가)-(다)
- ⑤ (다)-(가)-(마)-(라)-(나)

40. 다음 글에서 설명한 ‘교섭적 해독’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에코(Eco)는 텍스트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닫혀 있는 텍스트는 하나의 해독(읽기)을 다른 것에 비해 강하게 선호한다. 열려 있는 텍스트는 그 자체의 풍부함 때문에 또는 (문학 비평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감상될 수 있는 짜임새(Texture)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의 해독을 요구하게 된다. 열린 텍스트가 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고급문화에 해당함에 반해 닫힌 텍스트는 보다 일반적인 대중문화에 적합하다. 대부분의 매스미디어 텍스트는 특정한 해독(읽기)을 선호하는 만큼 닫힌 텍스트이다.

에코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탈해독(Aberrant Decoding)의 이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홀(Hall)과 몰리(Morley)는 파킨(Parkin)의 의미체계(Meaning system) 이론에 근거하여 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홀(Hall)은 텍스트의 구조가 해독자 자신의 사회적 조건에 반응하는 방식과 상응하는 TV 텍스트 해독(Decoding) 내지 읽기(Reading)의 세 가지 주요 형태를 제시한다.

(1) 지배적-हे계모니적 해독(Dominant-hegemonic Reading) : 이는 코드 작성자의 가정에 따라 텍스트를 충실히 그리고 직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선호된 해독이며, 파킨의 지배적 의미에 상응하는 것이다.

(2) 교섭적 해독(Negotiated Reading) : 이는 지배적인 코드의 합법성을 인정하되 독자의 특수한 사회적 조건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는 파킨의 종속적 의미 체계에 상응한다.

(3) 대립적 해독(Oppositional Reading) : 이는 대안적, 대립적 의미체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된 해독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급진적 해석(Radical Decoding)을 낳는다.

하나의 예로,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옷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 또는 어머니 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일련의 광고물에 대한 잠재적인 해독들을 들 수 있다. 지배적-헤계모니적 코드에 의거한 선호된 해독은 이러한 묘사를 정당하고 적절하며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공감한다. 교섭적 해독은 그러한 선호된 해독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이지 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직장 여성들에게서 나온다. 그녀는 남편이 청소를 도와야 하는(비록 남편이나 그녀가 모두 청소를 정상적으로는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조건에 상응하여 그 광고에 대한 자신만의 해독을 창출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다. 대립적 해독은 페미니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광고가 여성을 모욕하고 격리시키고 속박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남성 착취의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으로 해독하는 여성들은 그 상품을 사고, 두 번째 방식으로 해독하는 여성들은 그 상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 ① 전원일기의 김혜자는 한국적 어머니의 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② 드라마에서 부성이 상실된 가정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적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현실과 괴리된 소재의 선택을 의미한다.
- ③ 대중 매체에서 가정에 종속적인 여성의 모습을 비추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옳지 못하다.
 ④ 외도하는 남편을 용서한 맹순이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맹순이의 선택은 현실적이다.
- ⑤ 집안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변화된 가정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헌 법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국제법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므로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선언, 의결, 권고 등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③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제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 사이에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 ④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조약과 다른 내용의 국내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국제법준중의 헌법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⑤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2.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체포의 경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사후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적법절차는 신체의 자유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 ③ 김사가 중형을 구형한 경우 법원에서의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영장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때 국가권력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3. 다음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 ① 父는 미국의 국적을, 母는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상실했는데 다시 이혼한 경우
- ③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본인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3년간 계속 주소가 있으면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④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던 중 한국인 부모에 의해 인지된 성년자의 경우
- ⑤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3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는 경우

4.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 ②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 ③ 위헌결정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다.
- ④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 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 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②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헌법재판 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청구를 취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종료선언을 한 예가 있다.
- ④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6. 헌정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8년 5·10총선거는 미군정기의 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 ② 제헌헌법은 직접민주주의적 방법과 대의민주주의적 방법을 혼용하여 제헌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③ 1962년의 헌법개정에는 제2공화국 헌법규정에 따른 개헌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을 무차별 진압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중단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 ⑤ 제9차 개헌(1987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였다.

7.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형벌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국가법이 된다.
- ②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그 조례는 위법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⑤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면 헌법에 반한다.

8. 민주주의에서 실현되는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며,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② 정치적 평등은 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요구하지만 선거구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간에 인구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다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을 넘지 않으면 합헌으로 보고 있다.
- ③ 공직선거에서 고액의 기탁금제도는 정치적 평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그리고 1,5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④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다.
- ⑤ 다수결원칙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 ② 헌법의 개별규정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이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어떤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법률을 잠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없다.
- ⑤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거나 본안심판절차가 충분히 진행된 시점에서도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다.

10.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행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감사원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 ② 현행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④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계엄의 종류 및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1.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부서하고 책임을 진다.
- ③ 국회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 ④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의결내용에 따라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행정각부로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은 행정각부가 아니다.

12.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결정)에서 동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관습헌법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의 다섯 가지를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④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오랜 시간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규범적 확신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13.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③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이 교원들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은 공무원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⑤ 공무원연금급여를 전소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14.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사공개는 원칙은 본회의의 의사절차에서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일단 가결되었으나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⑤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15.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의 규정이 있으므로 다른 심판절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지정재판부에서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 ⑤ 가처분은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1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②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채소사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③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축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 ④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 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17. 신뢰의 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②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 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국제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왔던 종전의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이들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④ 국가 형벌권을 소급하여 부과하거나 형벌을 가중하게 하는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 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할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8. 헌법재판소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등록세율을 달리 하는 것
- ② 재직기간에 따라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
- ③ 민사소송의 가집행에 있어서 국가와 일반국민을 달리 취급하는 것
- ④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
- ⑤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19.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 권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 나. 정당의 당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다.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진정이 가능하다.
- 라.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마.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가 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 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가, 라 ② 나, 바
③ 다, 마 ④ 다, 바
⑤ 라, 사

20. 알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 ①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금지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
- ③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국회의 확립된 관행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21.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이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 ② 양심을 지킬 자유가 양심형성의 자유와 더불어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취운전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병역법 규정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3.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권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담세능력은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 ②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급여나 각종부담의 감면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볼 때, 법률조항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산재보험제도를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금 수급권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다.
- 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자가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일부 연금이나 수당이 지급정지된다고 하여도 이들에게 기본연금이 계속 지급되며, 양로시설에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유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5.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한국은행장	나. 국무총리
다. 농협중앙회 위원장	라. 법무부 장관
마. 사립대학교 이사장	바.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사. 행정자치부 장관	

- ① 가, 다
- ② 나, 라
- ③ 다, 마
- ④ 라, 바
- ⑤ 나, 사

26.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외국 비디오품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규정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다 - 라
- ③ 다 - 라 - 마
- ④ 가 - 바 - 사
- ⑤ 나 - 다 - 사

27.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식을 변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권한,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피청구인의 행위에 해당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이를 공고한 행위에 대해 제주도내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권한쟁의는 부적법하다.
-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은 강남구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28. 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②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④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공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29.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 ①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④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
-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0.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규정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교통사고’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과 중 ‘주유소에 한한다’ 부분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사.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다, 마
- ② 가, 나, 바, 사
- ③ 다, 라, 마, 바
- ④ 가, 나, 마, 바
- ⑤ 라, 마, 바, 사

3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만을 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의 개별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만을 정확하게 반영하여도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것까지 요구되며, 그 결과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도 국민의 지지 및 선호와 일치되어야 한다.
- ②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던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던 어느 경우이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왜곡되어 표출될 수 밖에 없다.
-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④ 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준다.
- ⑤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유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의한 간접선거의 결과가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32. 기본권 제한에 관한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틀리게 대답한 학생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교수 :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 등 여러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절대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범위 내에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데,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학생 A : 기본권 제한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입니다. 기본권 제한의 근거에는 헌법유보,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은 독일에서 논의된 이론으로 절대적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B : 헌법재판소 역시 독일에서와 같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 C : 헌법유묘에는 일반적 헌법유묘와 개별적 헌법유묘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
는 일반적 헌법유묘 규정이 없으나, 개별적 헌법유묘에 관한 규정은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헌법 제8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2
항,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2항을 드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D : 법률유보란 기본권의 제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권자에게 위임하여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유보에도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개별적, 일반적 법률유보 모두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 수 : 그렇다면 학생들이 말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 중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되려면 대상상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학생 E :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말하는데 이는 제3차 개정헌법에 신설되고 제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고 제8차 개정헌법에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학생 F : 형식상의 한계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에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위임입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G : 방법상의 한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하며 그 하부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H : 목적상의 한계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복리의 개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 ① 학생 A, B, D, E ② 학생 C, E, F
③ 학생 D, G, H ④ 학생 B, F, H
⑤ 학생 B, C, F

3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회가 이미 폐회한 후에도,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 ③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④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한다.
-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34.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A. 연금청구권
B. 의료보험수급권
C.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D. 정당한 지목을 신청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
E. 환매권
F.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의 영업권
G.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사 등
H.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
I. 치과전문제의도를 실시하지 않아 급료를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 ① A, B, C, F ② B, C, D, F
③ C, D, F, G ④ C, F, H, I
⑤ B, F, H, I

35. 국민의 보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마약의 소비매수행위를 다른 마약매매행위와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의 원리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구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친 사람들에게 시행규칙의 미비로 인하여 전문의자격의 취득을 막은 것은 이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 ⑤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그들의 침구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36.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이어야 한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④ 선거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다음에라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 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7.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 ②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38. 대의제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 ① 선거에 의하여 국민은 공직자에게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할 권한을 위임하지만 이때 그 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의 선출과 동시에 국회의 세력분포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대의제원리에 부합한다.
- ③ 헌법 제72조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임의적인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 ④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구속되는 것은 배제되지 아니하고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는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대의과정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통제수단을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투표부의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9. 다음 중 옳은 것(O), 옳지 않은 것(X)의 조합이 바르게 된 것은?

- A.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B. 위 A로 인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와 연한 그리고 실시의 시기·범위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C.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D.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고 본다.

E.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나,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 ① A(X), B(O), C(O), D(X), E(X)

② A(O), B(X), C(O), D(O), E(O)

③ A(O), B(X), C(O), D(X), E(X)

④ A(O), B(O), C(O), D(O), E(X)

⑤ A(X), B(X), C(X), D(X), E(O)

40.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측정과 관련하여 불응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관광사업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부과하는 것은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입법부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는 정신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그것보다 넓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